

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
| 제336회 제2차 정례회   |
|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    |
| 2022. 12. 13(화) |

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 
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142         |
| 제출일자 | 2022.11.17. |
| 회부일자 | 2022.11.22. |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  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#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이동업 의원 외 28명

2. 제안이유

- 태양광 설비의 설치·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나.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(안 제4조)

다.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라.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
마.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규정(안 제7조)

바. 태양광 설비 설치·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
#### 4. 관계법령

가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나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

#### 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#### 6. 관련부서 협의

가.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나.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#### 7. 검토의견

##### ☐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·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

##### ☐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**안 제2조(정의)**에서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“태양광 설비”에 대한 정의와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경상북도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“공공기관”에 대한 정의,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“전기설비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

- **안 제3조(도지사 등의 책무)**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도지사의 필요 시책 마련을 책무로 규정하고,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·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·관리하도록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함
- **안 제4조(적용대상)**에서는 경상북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와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를 본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함
- **안 제5조(설치기준 등 마련)**에서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,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과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규정함
- **안 제6조(설치기준 등의 권고)**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제5조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**안 제7조(디자인 공모 등)**에서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축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 추진을 규정함
- **안 제8조(태양광 설비 설치·운영 지원)**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에게 「경상북도 에너지 조례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제·재정 등의 지원을 규정함

## 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, 주변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와 민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태양광의 비중이 상당한(53.75%) 만큼 태양광 설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.

- 경상북도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 (2019년 4분기 기준, 한국에너지공단) -

| 에너지원별(1)             | 에너지원별(2)         | 경북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신·재생에너지 합계①+② (toe)  | 소계               | 924,699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① 재생에너지 합        | 917,781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② 신에너지 합         | 6,918          |
| 신·재생에너지 지역별 공급비중 (%) | 소계               | 7.48           |
| ① 재생에너지              | 태양열 (toe)        | 4,187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<b>태양광 (toe)</b> | <b>497,060</b> |
|                      | 풍력 (toe)         | 201,090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수력 (toe)         | 67,95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해양 (toe)         | -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지열 (toe)         | 17,327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수열 (toe)         | 573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바이오 (toe)        | 94,52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폐기물 (toe)        | 35,074         |
| ② 신에너지               | 연료전지 (toe)       | 6,918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IGCC (toe)       | -              |

-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확대 등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신·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입법의 필요성, 내용의 정당성,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